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공공기술 이전(출자)을 받고 외부로부터 신규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상 R&BD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 도모
- 공공기술 이전(출자)받은 신생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중소형 기업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역량 확보 지원

□ 사업내용

- 공공기술 이전(출자) 및 투자유치를 받은 창업 초기 기업에 시험·분석·평가, 기술 패키징, 시작품 개발, 마케팅 비용 등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항목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과 조기 창출
- 시험·분석·평가, 기술패키징, 시작품 개발, 국내외 표준·인증, 양산기술 개발, 디자인 목업 제작, 마케팅 기획 등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일체 항목 지원

2. 지원내용

① 사업 예산 및 과제별 지원규모

- 예산규모(신규과제) : 총 1,600백만원(8개 과제 내외)
 - * 상기 정부예산은 주관 부처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
- 과제별 지원규모(정부출연금 기준) 및 기간 : 연간 200백만원 이내 / 최대 1년
 - 투자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매칭비율 1:5로 지원하며, 투자유치 상한금액 40백만원까지 인정
 - * (예시) 40백만원 외부투자 받은 경우, 투자금의 5배수인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지원
 - ** 지원기간, 금액 및 지원대상 수 등은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를 통해 심의·조정될 수 있음

② 지원대상 및 내용

- 지원대상
 - 주관기관 : 접수마감일 기준 **창업 5년 이내 기업**으로, 외부로부터 투자^{*}(15년 8월 1일 이후 신규 투자유치를 완료)를 받고, **공공연구기관^{**}으로부터 기술이전(출자) 받았거나 예정인 특구기업**
 - * 벤처캐피탈(VC), 엔젤투자(엔젤클럽, 엔젤조합, 엔젤펀드 등), 액셀러레이터,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운영 및 사업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받은 투자(투자계약서 날인 날짜 기준)
 - **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5항(국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(산학협력단 포함), 국방과학연구소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)에 따르며,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(분원)도 포함
 - ***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(스타트업) 사업 등 사업지원 조건으로 매칭한 투자금은 불인정(단 별도로 추가 투자 유치시 지원 가능)

- 참여기관 : 타 기업, 대학·출연(연)·전문(연) 등 연구기관, 컨설팅기업, 디자인 전문기업 등 사업추진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
- 지원내용 : 기술적 타당성 검증,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
- 시험·분석·평가, 기술패키징, 시제품 개발, 국내외 표준·인증, 양산기술 개발, 디자인 목업 제작, 마케팅 기획 등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일체 항목 지원

③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징수 기준

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

정부출연금 출연 기준	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
가.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: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	가.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: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
나.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: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	나.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: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
다.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: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	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: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
라.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(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)	
마. 그 밖의 경우 :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	

- 1) '대기업'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- 2)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 기업의 범위) 제1호에 따른 기업
- 3)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

<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신청 예시(중소기업 기준) >

구 분	정부출연금	민간부담금		총사업비
		현 물	현 금	
금 액	200백만원 이내 (외부투자금대비 5배수 이내)	61백만원	6.7백만원	267.7백만원
비 율	75% 이내	22.5% 이상	2.5% 이상	100%

□ 기술료 징수

-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(혁신성과, 보통) 및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, 보통,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업은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기간에 납부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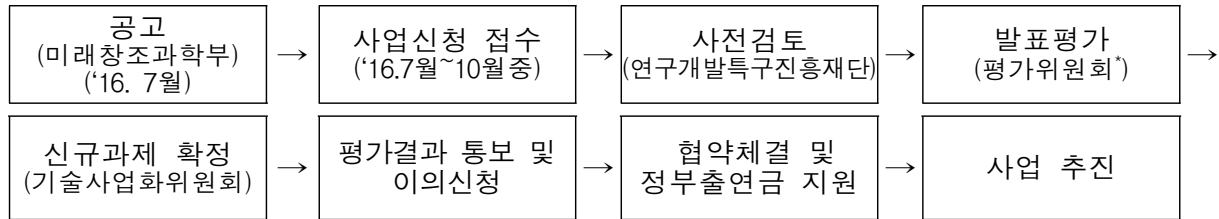
실시기업 유형	정액기술료*
대기업	정부출연금의 40%
중견기업	정부출연금의 20%
중소기업	정부출연금의 10%

* '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' 제22조를 따름

※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,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·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

3.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

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·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기술성	• 출자·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	40
	• 출자·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	
	•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	
	•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	
사업성	•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	30
	•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	
	•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	
사업화 역량	• 주관기관(참여인력)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	30
	• 주관기관의 출자·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	
	•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	
계		100

※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(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)의 “10.신규평가 - 가. 사전 검토”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□ 유의사항

세 부 내 용
○ 신청자는 신청 과제에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- 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○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○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○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,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,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 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○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“기술이전의향서”를 사용하되,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, 기술이전 전담조직(TLO 등)의 협이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○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시, 투자 완료를 증빙해야 함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-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-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

4.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및 접수방법 등

-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 접수방법 공고
 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(<http://www.innopolis.or.kr>)
 - 이노폴리스라이브러리(www.dit.or.kr)

□ 제출서류 목록

- 해당 서류는 원본 및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, 전자파일(PDF) 형태로 저장매체에 제출

번호	서 류 명	제출형식	서식	비고
1	사업계획서	원본1부	서식 1호	주관기관 제출
2	사업자등록증	원본 1부 (사본 원본대조필)	-	모든 기관 제출
3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※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	원본 1부	서식 2호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4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원본 1부	서식 3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5	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원본 1부	서식 4호	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
6	연구시설/연구장비 구입 및 활 용계획서	원본 1부	서식 5호	해당시 제출
7	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	원본 1부	서식 6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8	회계감사보고서/재무제표*	사본 1부	-	최근 3개년도
9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원본 1부	-	최근년도기준, 주관/참여기업 모두 제출 (비영리기관 제외) *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
10	중소기업확인서** 또는 중견기업확인서**	원본 1부	-	주관/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*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

번호	서 류 명	제 출 형 식	서 식	비 고
11	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가능	사본1부	계약서 사본 또는 서식 7호	기술이전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나,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서식의 “기술이전 의향서 제출”
12	투자계약서 및 입금확인증	사본 각 1부	-	
13	법인등기부등본	원본 1부	-	주 관/참여기관 모두 제출 * 사업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
14	주주명부	사본 1부	-	
15	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확인서	원본 1부	서식 8호	주 관/참여기관 모두 제출

※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: 중소기업확인서(<http://sminfo.smba.go.kr/>), 중견기업확인서(<https://www.hpe.or.kr/>)

- 주의사항 :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

5. 문의처

☐ 문의처

구 분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사업관련 문의	김희정 연구원	042-865-8983	hjkim@innopolis.or.kr